「채플위원회 규정」 신구조문대비표

2006. 2. 28. 개정 판 (시행 2006. 3. 1.) → 2004. 3. 1. 제정 판 (시행 1998. 3. 1.)

바뀜 7 · 신설 1 · 삭제 0 · 번호 변경 0

공식 원본 law.syu.ac.kr · https://suleap.syu.my/r/55/compare?from=127&to=126 · 내려받은 때 2026. 10. 22. 오후 5:15:38 · 밑줄은 바뀐 부분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명칭) 본 위원회는 삼육대학교 채플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라 한다.	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(이하 "본교"라 한다) 각종 출판물 간행과 출만물 검열을 위해 설치된 출판위원회 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목적) 본 위원회는 채플의 전반적인 운영 및 순서 계획과 학생들에게 채플을 통하여 신앙교육을 효율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	**제2조(구성)** 1.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일,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된다. 2. 위원장은 출판부장으로 한다. 3. 본 위원회의 위원은 출판부장, 신학대학원장, 위원장이 위촉하는 해당 분야 교수 2인으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제3조(구성)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 1. 본 위원회는 교목실장, 교목부장, 교목실 및 교회 목사들, 전도사들, 생활교육관장(2), 학과예식 목사들로 구성한다. 2. 본 위원회의 의장은 교목실장이 하며, 서기는 교목부장이 한다.	**제3조(심의 사항)**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. 1. 운영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2. 출판 선정 및 사전, 사후 검열 3. 관련 규정의 제정 및 조정 4. 기타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
제4조(회의소집) 정기회의는 매 학기 초와 말에 소집하며, 임시회의는 위원들 중 2인 이상이 요청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.	**제4조(검열 대상)** 본 위원회의 검열할 수 있는 간행물은 다음과 같다. 1. 본교 이름으로 발행하는 교재 및 교양 도서 2. 교외에서 발간하는 본교 교직원의 출판물
제5조(회의 성립 및 의결) 위원회는 재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	**제5조(위원장 직무 및 회의 소집)** 1.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한다. 2.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제6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들을 심의하고 의결한다. 1. 채플 운영 및 순서 기획 2. 채플 출석 규정 3. 채플 결석자 교육 4. 채플 예산, 결산 5. 기타	**제6조(의사 정족수)**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.
제7조(운영 세칙) 채플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중 필요한 것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.	**제7조(회의록 작성 및 보관)** 본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심의 의결된 사항을 문서로 보관하여야 한다.
<신 설>	**제8조(시행)**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총장의 재가를 얻은 후 시행된다.